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5
------	------

제출일자 : 2022.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필수업무종사자 정의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조항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정비 (안 제1조, 제2조)
- 다. “필수노동자”를“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 변경 (안 제3조 부터 제9조, 제12조, 제1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시기 특정 (안 제6조)
- 마.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9조)
- 바. 위원회 소집사유를 구체화하고, 간사를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3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4. ~ 2022. 10. 24.)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를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조 중 “지정한 업종으”를 “지정하는 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등)”을 “(지원계획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수노동자”를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담당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p>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

는 사람

<삭 제>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

----- 지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

제5조(실태조사) ① -----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

-----.

② (생략)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략)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지원계획수립 등) ① -----
---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 지원계획-----

--.

1. 필수업무 종사자 -----

2. (현행과 같음)
3. 필수업무 종사자 -----

4. ----- 필수업무 종사자 -----

② ----- 지원계획-----

-----.

제7조(지원 사업) ① ----- 필수업무 종사자 -----

-----.

1. 필수업무 종사자-----

2. 필수업무 종사자 -----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3. ---- 필수업무 종사자 ----

--

4. ----- 필수업무 종사자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

1. ----- 필수업무

2. 필수업무 종사자 -----

3. ----- 필수업무 종사자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청장-----

-.

③ -----

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생략)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

1. (현행과 같음)
2. 필수업무 종사자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필수업무 종사자
----- 부서장-----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필수업무 종
사자 -----

-----.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일자리청년과 일자리기획팀 박인영
연 락 처	2627 - 2024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1. 19.]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